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51
----------	-----

제출년월일 : 2012. 6.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 평창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3. 그 밖에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나. 지원사업 (안 제4조)

-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의 제한 (안 제7조)

-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라.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8조)

-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마. 기능 (안 제9조)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승인 : 기획감사실 자치법규 심사완료

라. 입법예고 : 2012. 03. 16 ~ 04. 05 (21일간), 의견제출 없음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숙박업소를 말한다.
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3.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 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3. 그 밖에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선정된 모범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종사자 들에 대한 글로벌 마인드 교육으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함.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계		1,884,000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20,000,000원 × 80개소	1,600,000	
글로벌 마인드 위탁교육	20,000,000원 × 2회 × 6년	240,000	
모범업소 인증마크 제작	550,000원 × 80개소	44,000	

나. 재원조달 방안

-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환경과 환경과장 최찬웅
연락처	(033) 330 - 23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이후 (2016년 이후)	계	
세 입							
세 출	163,300	307,150	307,150	307,150	799,250	1,884,000	
위생업소	120,000	260,000	260,000	260,000	700,000	1,600,000	
시설·환경 개선 글로벌 마인드	40,000	40,000	40,000	40,000	80,000	240,000	
위탁교육 모범업소	3,300	7,150	7,150	7,150	19,250	44,000	
인증마크 제작							
재원 조달	163,300	307,150	307,150	307,150	799,250	1,884,000	
의존 재원	소 계	163,300	307,150	307,150	307,150	799,250	1,884,000
	보조금	-	276,430	276,430	276,430	719,320	1,548,610
	지방교부세	163,300	30,720	30,720	30,720	79,930	335,39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이하생략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 가. 생략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이하생략